

# 평창군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11 . 26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7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조례특위('99.12.21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경식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해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정하고, 군기 제작규격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.

### 나. 주 요 내 용

- 평창군기조례중 군기의 제작규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「별표1」의 군기모형 및 규격과 「별표2」의 문장 또는 철인, 「별표3」의 휘장모형을 이미지 통합사업에서 확정된 심볼마크로 변경사용코자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허해성)

- 현행 군기는 23년전인 197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8개읍면 상정하였으나 예산이 투자되어 실행된 평창군 이미지 통합

사업에 의해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등 별문제될 것이 없으나 앞으로 본 도안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는 주민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?	○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내고장 소식지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- 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.
- 전문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게하기 위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1부